



일회용 난자사용 결의사항 통보 각 지부, 분회 및 수도권상인연합회 등

위생적이고 신선한 계란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촉진과 가격안정은 물론 국민보건향상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5일 채란분과위원회 및 전국계우회연합회에서 수도권상인연합회와 사전 합의한 바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회용난자를 사용키로함에 따라 각 지부, 분회, 지역계우회는 물론 수도권상인연합회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 음-

가. '94. 9.20까지는 사전준비 및 홍보기간으로 하고 '94. 9.21부터는 일회용 난자(종이난자)만을 사용키로 한다. 즉 한번 사용한 난자는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나. 난자대금은 별도 계상치 않고 계란가격에 포함시킨다.

합시킨다. 즉 앞으로 조정(고시)되는 계란가격에는 난자금액이 포함되는 금액임.

다. 기타

(1) 수도권 상인연합회에서도 기위 일회용 난자를 사용키로 하고 본회가 결정하는 시기('94. 9. 21)부터는 계란을 살기위해 농장에 들어갈때 난자(기위 반복사용하는 난자)를 갖고 들어가지 않기로 하였음(빈차로 들어가 농장에서 확보된 일회용 난자만을 이용하여 계란을 운반키로 함).

(2) 계산서 발급시는 계란대금으로만 발급하고 난자대는 계란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계산서에 난자대금을 별도 발급치 않기로 하였음.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9일 농림수산부 공고 제 1994-49호('94. 8.23)와 관련한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서 “계분의 부산물 비료 판매 허용”을 주내용으로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농림수산부 공고 제 1994-49호('94. 8.23)와 관련됩니다.

2. 양계업자(타 축산농가 포함)가 계분비료 생산에 적합한 시설(오수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계분 발효 건조시설)을 갖추고 자기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분 등 부산물만을 원료로 하여 양계업(타 축산농가 포함) 경영의 일환으로 계분(부산물) 비료를 생산·판매코자 하는 경우는 허가나 등록 절차없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비료 성분 검사를 받아 농장상표를 첨부하여 비료원료가 아닌 부산물 비료로 판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요청사유

가. 양계농가에서는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계분처리(발효건조로 유기질 비료화)시설을 최신식으로 갖추고 환경보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처리되어 유기질 비료화된 계분을 판매코자

해도 비료관리법 제2조 3항 및 동법 제11조 1항 규정의 저촉을 받아 비료로 판매할 수 없으며 비료 원료로만 판매할 수 밖에 없어 양계농가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나. 현재 양계농가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분처리시설은 정부에서 계분비료공장허가를 받은 업체의 시설보다 우수할 뿐아니라 여기서 생산되는 계분비료도 기존의 허가업체에서 생산되는 계분비료의 성분과 질적인 면에서 동일하거나 우수한데도 제도의 모순으로 비료관리법상의 무허가 비료이므로 기존의 비료생산업체(허가업체) 또는 실수요자에게 비료원료로만 저가로 판매할 수 밖에 없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다. 비료관리법 제23조 제2항 규정은 부업 축산농가 또는 부산물 비료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농장에 오수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계분처리시설(발효건조로 유기질 비료화가 가능한 최신식 자동화시설임)을 한 농가에 대하여는 등록절차 없이 비료원료가 아닌 부산물 비료로 농장상표 및 성분등록표를 붙여 판매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라. 양계농가(타 축산농가 포함)의 경우는 양계업(축산업)을 본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계분을 자가처리하여 완벽한 유기질 비료화된 계분을 비료로 판매코자 하는 것일뿐 비료 생산판매자체가 주업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할 사유가 없음.

마. 농장에서 자가 생산 처리된 계분을 부산물 비료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므로 비료공장의 횡포를 방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비료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생산계분의 조속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코자 함에 있음. 끝.

농촌진흥청의 실상평가와 축산관련 시험연구, 종축생산기관의 개편에 대한 건의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등 축산관련기관을 농림수산부 직속으로 이관 건의

본회를 비롯한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양돈협회는 지난 8일 공동으로 농촌진흥청을 평가하고 관련기관의 개편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건의서

국민의 원형은 사람이기에 생물학적으로 후대에게 계승되어야 하는 생존권입니다. 그 생존권은 세포대사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농축산물의 식량이 정기적으로 위의 용적의 정량이 공급되어야 유지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식량공급에 대한 보장을 소홀히 하면 그 민족은 생존권을 상실하게 되어 오늘날의 북한, 쿠바, 아프리카 빈국들과 같이 정치적인 혼란과 기아의 참상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량식량자급률이 32.5%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적인 비상상태입니다. 특히 축산업에 있어서 쇠고기의 자급률의 저하와 사료공급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원인 규명과 개방화 시대의 UR과고에 상응하는 정부의 대책이 양축농민을 위시하여 식량자급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단이 기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학문을 기초로 하는 과학적인 실무기술이 양축농가들에게 체질화되어 정착하도록 정부는 정책적으로 일관성있게 보호육성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지배력이 무력에서 정치로, 정치에서 과학으로 변모하면서 정보산업사회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정세하에서 장래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국내의 환경과 여려가지 여건의 열악한 실태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대책으로 축산기술의 개량향상을 위한 기초과제인 학문의 과학적인 원리와 법칙을 연구·개발하는 국가의 축산관련시험연구와 종축생산 기관의 기구와 조직이 축산업과 가축의 생태학적 기본생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독창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제식민통치가 소멸된 후 50년간의 사도행진의

실적을 평가하고 장래정도를 향한 개선방안을 양축 농가들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보편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검토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1.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제1조 목적과 동청 직제의 제3조 직무의 명문조항과 같이 일제의 농사시험장이 해방후 과도정부령 제160호 농업기술 교육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농사개량원과 농업기술원 및 농사원까지의 업무를 계승한 농업의 시험 연구와 농민교육사업의 관장기관입니다.

정부의 조직과 기구면에서 농축산업에 관한 정책과 행정기능은 농림수산부의 관장사항이며 동부각 국의 소관업무임으로 농촌진흥청은 정부조직법상 농림수산부 산하의 제1차 소속관서이여야 하며 외 청은 아닙니다.

금후의 농촌진흥청은 현재와 같은 외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산림청, 수산청외 정부내각부의 외청의 조직, 기구, 기능을 참고로 하여 순수한 시험연구기관으로서 학문과 기술의 전당이 되도록 개편하여야 합니다.

농사원을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5.16군사혁명후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명으로 개칭하고 외청으로 재편하면서 하부조직으로 농촌진흥소를 개설하고 농촌지도직을 배치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지도라는 기관명이 독재성향의 술어라는 것 입니다.

농촌진흥은 일제가 우리나라 농민을 수탈할 목적으로 농촌진흥자력갱생을 강요하였던 총독치하에서, 또 지도는 북한의 김일성의 지도이념과 김정일 지도자라고 하는 제국과 공산주의국가에서 독재자를 존경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말들입니다.

특히 농촌이라는 지역을 기관명으로 하여 진흥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농촌진흥법과 동청직제의 목적과 직무에 위반됩니다.

근래의 농촌사회구조는 농촌진흥청의 임무만으로 진흥한다는 것은 과장된 허구요, 농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농촌진흥청 직접소관의 중요한 농촌에 관한 업무의 실례는 농축산업의 기반조성 사업인 농지의 정리와 보전,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 농촌도로의 개량과 교통문제, 농축업의 기자재의 생산과 공급, 농산물의 판매유통, 영농자금의 지원, 농가의 주거 개량, 농촌의 상하수도와 문화시설, 자연보호와 공해, 농가의 농외소득, 농사인력과 후계자의 양성,

농촌아동의 교육문제, 농민의 의료보험과 노후의 사회복지대책 및 농민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민주화문제 등 농민을 위한 과제는 중앙정부의 각부처 청, 시도군구읍면 등의 실적정책의 지원업무가 균형있게 상호보완 발전하여야 농촌이 진흥된다는 것입니다.

2. 정부의 개혁정책은 민주화의 분권분업에 의한 학문을 기초로 하는 과학적인 기술입국입니다. 현재 농림수산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 개선과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양대사업의 성공과 발전의 관건은 농가현장에 실천 할 수 있는 시험연구 사업의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서 국제경쟁력을 배양하여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의 직제는 민주화하여 본청은 폐지하고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고위직과 행정관리 기능은 축소하여 하부기관으로 재배치, 이관하고 각시험장, 연구소는 분권분업원칙에 따라 기능별로 농림수산부 각국직속으로 개편하여서 과거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국가 부담을 감소하여야 합니다.

3. 세계의 각농업국가들은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농업생산의 정책업무와 시험 연구사업을 분리할 수 없으며 학문이나 기술을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배를 하면 학문의 발달과 기술의 향상은 물론이고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산물 품질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일본만이 농촌수산성내에 농촌수산기술회의라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비상근인 회장과 위원을 위촉하고 실무국장과 같은 직위의 사무국장이 각시험연구기관의 업무를 실험적으로 지원하는 국단위의 기구일 뿐, 조정협조업무만을 관장하고 있으며 각시험연구기관은 농림수산성 직속으로 농업연구센타와 13개시험장과 연구소를 독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미국은 ARS(AGRICULTURE RESEARCH SERVICE)라고 하며 영국은 NAC(NATIONAL AGRICULTURE CENTER)라고 하여 농림부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교육사업의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개량보급소라고 하고 농촌지도원을 농업개량보급원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AES(AGRICULTURE EXTENSION SERVICE) EXTENT·ION WORKER라고 합니다. 그러한 차

이를 비교하여서 우리나라가 민주적인지 일본과 미국이 민주적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권위주의적인 관련기관들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4. 농업과 축산업은 생리적인 구조면에서 학문이나 기술적으로 유이성이 없습니다. 농업은 식물인 작물을 작목으로 하여 주로 식물성 단수화물식품을 직접 생산하며, 축산업은 동물인 가축을 작목으로 하여 동물성 단백질식품을 우회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상호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생물의 생태학적 번식생리에 있어서도 그 생산성이 식물은 동체번식으로 계절생산을 하며, 동물은 이체번식으로 연중생산을 합니다. 그 와같은 생물과 가축의 영원한 진리이기에 축산업의 시험연구사업은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충실히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농촌진흥청으로 되어있는 축산시험장의 타율적인 개발의 과거는 소수 농업부문의 권위주의자와 축산분야의 자학행위자에 의하여 축산업에 대한 상호간의 의무와의 보완성과 학문의 전통성과 전문성을 유린하는 인재의 점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후 민주화를 지향하는 분권과 분업이라는 정부의 체질변화와 축산관계인사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1952년 중앙농업기술원에서 중앙축산기술원을 분리신설하여 1957년까지 만 5년 7개월간 축산의 시험연구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자주적으로 독립운영하였습니다. 그 기간 기구면에 4개지원 신설과 시험축사의 완비, 연구인력의 확보 등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1958년 중앙농업기술원을 농사원으로 개편하면서 중앙축산기술원을 축산시험장과 지원을 지장으로 흡수개편하여 독립성을 상실하게 한 후, 농사원은 발족 2년 9개월만에 축시를 농사원시험국축산부로 편입하면서 축산시험장이라는 기관을 폐쇄하고 장장을 부장으로 하여 그 직급을 당시 2급감에서 2급으로 격하한후 5.16군사혁명과 함께 1962년에 농촌진흥청이 신설되어 축산부는 5개월만에 축산시험장으로 개편되었으나 1967년에 축시의 직제를 개정하면서 지장을 종축별로 개칭하고 장장의 직급을 당시 3급감에서 3급을로 격하였습니다.

일제총독부직속으로 설립하여 해방후에 전체용지를 완전히 조정 국유화하여 관리활용하던 국가의 축산시험연구기관인 경주종양장을 폐쇄하고 그 용지와 시설을 편법으로 민간에 대여불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축산시험연구사업의 과제설정에

있어서도 축산학계의 정론을 무시하고 1970년 ~ 1979년까지 7년간 전국규모로 확대실시하였던 육종개량과정을 무시한 “섬바디”의 사료작물화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국고의 부담만을 가중하게 한 책임 문제와 구미선진국과는 150년, 일본과는 50년의 후진성을 의미하는 한우와 외국종, 특히 “샤로로” 와의 교잡 문제에 있어서 20세기 후반기에는 소의 신품종을 육성하는 나라도 없으며 학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화우개량학자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막연히 외국육용종을 도입하여 자기나라의 고유품종과 교잡을 한다는 것은 품종의 파양을 초래할 뿐이며, 특히 신品种 육성을 위한 교배는 개량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도배들의 소행으로서 그 지역에 적용하는 육용종의 조성 · 고정 등의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백년하청이라고 단언합니다.

WTO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한우의 교잡사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거를 반성하고 축시의 한우육종개량사업은 고유의 육질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장특별지시에 따라 실시한다는 사슴의 시험사업 등은 세계적으로 국립시험장에서는 그 유례가 없습니다.

1958년 중앙축산기술원을 농사원으로 흡수편입한 후 농촌진흥청까지 46년간의 축시는 본장, 지장 및 과의 편제 등 빈번한 직제개정과 학자를 우대하는 선진국의 예와는 판이하게 장장의 직급격하 연구기관의 폐쇄 및 연구과제의 오도 등 무수한 난맥상은 국내외적으로 그 실례가 없는 민주화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관료성향에 기인하는 결과입니다.

5. 가축위생업무는 국제적으로 의사와 같이 수의사법에 의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정부가 면허하는 수의사의 고유임무이며, 가축의 방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의하여 행정관서의 소관사항입니다.

1958년 1월 가축방역의 법적의무가 없는 농사원이 가축위생연구소를 흡수하여 현재까지 36년 8개월간을 농촌진흥청산하기관으로 관장하고, 행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 기간중 수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수의사가 아닌 소장을 임명하여 6년 8개월간을 재임하게 하였다는 것은 위법이며 학문적으로 패륜입니다.

농축산업은 작물과 가축의 생리적인 세포대사의

증식을 조장하여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가축위생의 수의학은 가축질병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 세균 미생물 등의 세포대사를 억제하는 학문이기에 세포학적으로 증식과 억제의 추구하는 방향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가축위생연구소는 선진국과 같이 수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농림수산부 축산국 직속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6. 가축업의 종축생산사업은 자본의 투자가 소액으로는 불가능하며 자금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하여 축산발전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종축생산에 선도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종축원과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립종축원은 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통치자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는 것과, 남원과 대관령지원은 축산업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과의 국제협력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통치자의 지시와 국제간의 신의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림수산부만이 빈번하게 자행되는 인사행정으로써 종축원직제에 이사관을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문화하고 현재도 행정이사관을 원장으로 보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축원의 업무중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 서무에 속하는 행정사무외에는 100% 현업의 종축생산과 관련이 있는 생산의 학문과 기술업무입니다.

그러한 현업관서에 고급행정관을 배치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공직자의 능력의 낭비요, 행정이 고유의 학문과 기술을 지배하는 결과로서 종축원업무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국립종축원의 원장에 행정관 임명은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것임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민정서가 좋지않으나, 약 50~100년의 연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립종축원과 같은 14개의 국립종축목장이 개별적으로 농림수산성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종축원은 농림수산부 직속의 현재 편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종축목장의 종축별 기술업무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술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7. 축산관련시험연구와 종축생산기관의 개편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축산업의 생리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권위주의적으로 강제편입개폐한 축산분야의 시험연구기관들을 자체없이 개편 전으로 원상환원하고 다시는 농촌진흥청의 현재와 같은 행정관리 기능을 지지강화하는 수단으로 국립종축원을 위시한 관련기관의 흡수, 이관, 통합 등 축산발전의 장해가 되는 과거와 같은 타율적 정부의 오판은 문민정부를 민주화시대의 분권분업에 역행하는 발상이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6개월만에 원상으로 복귀하였던 실패를 딛습하여 현재의 산하 기관인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및 국립종축원을 가칭 축산기술원으로 통합하여 축산부, 가축위생부, 종축부 등으로 개편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원 등 삼중행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삼등기관으로의 전락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문화가 향상되면 식생활의 유형이 식물성탄수화물에서 동물성단백질로 전환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정부는 순응하여야 합니다.

정부기관중 축산업의 정점은 농림수산부 축산국이며 직속기관으로는 시험연구기관과 양축농가 중심의 축협이 있습니다.

그중 축협은 농협관리에서 1981년 독립하여 현재까지 농협과 대등한 발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험연구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배하에서 아직까지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거를 반성하고 장래를 사려깊게 통찰하여 축시와 가축위생연구소 등 축산관련기관을 농림수산부 직속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1994. 9. 8.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장 최준구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강성원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부회장 겸 분과위원장에 최원악 전
가평분회장 추대

9월 육계분과위원회가 지난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결원된 임원을 선출



△최원악

하였는데 부회장 겸 분과위원장에 최원악 전 가평군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데 이어 분과위원회 부회장을 뽑기위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강용식 전 천안육계분회장이 선임되었으며 감사에 엄재국 전 이천육계분회장, 이사에 강용식, 최길영 사장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세미나를 겸한 육계인단합대회를 오는 10월21~22일 양일에 걸쳐 충남 계룡산에서 개최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일회용난좌 9월21일부터 사용키로

9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특란가격이 85원을 기록하면서 노계도 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번 회의에서는 왕란고시, 종이난좌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왕란고시는 계란유통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어 앞으로 특란과 5원이상의 가격차이를 두고 거래하는 방향으로 결의를 했으며, 위생적인 계란유통을



위해 9월21일부터 각 농가에서 일회용 난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난좌가격을 계란1개당 1원을 더 고시하고 난좌가격은 소비자가 부담키로 결정했다.

신입직원 채용



△이민균

본회는 편집부에 근무하던 이인수씨가 의원면직됨에 따라 이민균(강원대학교 축산학과 졸업예정)씨를 신입직원으로 채용하였다.